

정·부학생회장 선거규정 시행세칙

제정 1979.03.01.

개정 2001.06.15.

개정 2009.02.06.

개정 2012.02.01.

제1조: 선거투표 용지에 학생지도위원 1명의 날인 난을 넣어 공정선거에 임하며 불신의 요소를 제거한다.

제2조: 투표에 사용되는 용지는 번짐을 방지하고자 갱지와 적색스탬프를 사용하며 기표도장은 선관위에서 결정한 붓두경을 사용한다.

제3조: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학생회장직에서 사퇴시 선거를 무효화하며 재선거 또는 간접선거를 한다.

제4조: 선거권자 추천서 명부의 날인 난에는 도장 또는 인장, 서명이 가능하며 학생증 사본을 첨부한다.

제5조: 선거인 명부 대조부에는 반드시 도장 또는 인장만 사용할 수 있다.

제6조: 각 후보자가 선거규정 및 시행세칙인 서약서 준수 사항을 위반시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적용한다.

제7조: 선거투표·개표 과정 중에는 각 후보자가 선거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(유권자보호)

제8조: 과별 선거유세는 사전에 계획일정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일정을 배정받아 선관위원의 참석하에 유세한다.(단, 수업 중에는 선거운동을 불허한다)

제9조: 기표한 투표용지가 선거인 명부보다 과다하여 당락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시 과다한 수만큼 각 후보의 유효표에서 동일하게 공제한다.

제10조: 투표용지는 투표장의 별도 함에 보관하고 선관위원장이 200장씩 불출한다.

제11조: 각 후보자는 투표전일 23:50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제12조 편의상 투표시간이 주·야로 구분되어 있으나 주간학생도 야간에 야간학생도 주간에 투표할 수 있다.

제13조: 정·부학생회장 선거규정 및 준수사항 위반시, 그 외 부적당한 사항이 고발되거나 또는 적발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조치 및 경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(각 후보 경고 2회시 후보자격박탈)

제14조: 홍보물에 관한 사항(선거관리위원회의 접수증 교부 후 부착), 현수막, 벽보, 정책집을 배포(부착)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도장을 받아야하고, 풀칠은 금지한다.(적발시 1회 경고)

제15조: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 수수 발견시 자격을 박탈한다.

제16조: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선거결과에 승복한다.

제17조: 타인에게 투표를 강요하지 않는다.

제18조: 게시판 이용은 교내 게시판, 건물 내 게시판 이용으로 한다.

제19조: 타 후보의 선전물 훼손시 자격을 박탈한다.

제20조: 타 대학생, 휴학생 또는 외부인을 동원하여 학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였을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하여 학칙에 적용 한다.

제21조: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였을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한다.

제22조: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협박, 폭행, 납치, 감금 등의 행동을 가할 시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.

제23조: 그 외 선거기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선거 운동원에게서 일어났을 경우 자격 박탈과 본 대학 학칙을 엄중히 적용 한다.

제24조: 다음 각항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.

- ① 선거홍보물의 규격과 수량 및 정해진 홍보물의 홍보물을 유포(부착)할 시.
- ② 교. 내외 선거사무실 및 합숙소 발견시.
- ③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 선거운동을 할 경우

- ④ 입후보자가 공탁금 납부 또는 뇌물(선거경비 등)을 수수할 경우
- ⑤ 정. 부학생회장 선거규정 제4장, 제15조 각항 위반시
- ⑥ 경고 3회 이상시
- ⑦ 선거에 관한 각종 양식은 별표와 같다.